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26
----------	------

제출년월일 : 2009. 4. 2.
제출자 : 안산시장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위원회 구성 요건(민간전문가 1/3이상 참여)에 적정한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 존속 기한 설정(5년) 내용을 조례에 반영.
- 기금별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
-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이자지급, 배정계획, 융자금 이자계산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통합관리기금 및 개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안 제3조의 2)
- 통합관리기금 및 개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안산시 통합관리 기금운용위원회 설치(안 제6조)
- 민간전문가가 1/3이상 참여하는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구성(안 제6조의 2)
- 통합관리기금 운영상 문제점 개선(안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 기금별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회 및 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부칙)
-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기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존속기한 5년을 설정(부칙)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9. 3. 16 ~ 3. 26(1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통합관리기금 및 개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 2(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통합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통합기금 및 개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한다.

제2항제2호 중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통합기금 및 개별기금 운용계획 수립·변경”으로 한다.

제2항제3호 중 “통합기금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통합기금 및 개별기금 예산·결산보고서”로 한다.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금의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 2(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별 담당 국·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 전문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제5항,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공무원 및 기금별 자문위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기금별 자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중 “매 회계연도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에 년 1회 지급한다.”를 “매 회계연도 말에 지급하고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에 정산한다.”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에 “다만, 각종 장부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제15조제1항 중 “통합기금관리관에게”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월별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기금관리관이 이를 확정한다.”를 “월별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통합기금관리관이 이를 확정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융자금의 이율은 시중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2에 따른 존속기한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위원회 폐지)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조례」,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안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구성된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안산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안산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안산시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 안산시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안산시 도시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안산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안산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안산시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회는 각각 이를 폐지하고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 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심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다.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삭제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2에 따른 존속기한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 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2에 따른 존속기한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 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장애인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2에 따른 존속기한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④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 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으로서 노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심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2에 따른 존속기한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⑤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은 법 제71조제3항 및 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심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삭제한다.

⑥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여성발전기금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4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기금의 심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⑦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 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 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심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를 삭제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2에 따른 존속기한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⑧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 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 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심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를 삭제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2에 따른 존속기한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⑨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 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 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다.

제15조의 2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2조를 삭제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2에 따른 존속기한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⑩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 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 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삭제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2에 따른 존속기한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⑪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삭제한다.

⑫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삭제한다.

⑬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⑭ 「안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 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제2항 및 같은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2에 따른 존속기한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소관 실과		기획예산과
임 안 자	실·과장	기획 예산과장
	직위·성명	박 석 운
	담당·팀장	예산2담당
직위·성명		정 양 민
담당자		이 건 율
성명·전화		(행정 2808)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통합관리기금 및 개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신설></p>	<p>제3조의 2(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통합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안산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 및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2.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통합기금 예산 및 결산보고서 4.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변경 5. 유사·중복기금 및 불합리한 기금의 통·폐합 조정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p>③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한다</p>	<p>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p> <p>.....</p> <p>.....</p> <p>.....</p> <p>.....</p> <p>1. 통합기금 및 개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p> <p>2. 통합기금 및 개별기금운용계획 수립·변경</p> <p>3. 통합기금 및 개별기금 예산·결산 보고서</p> <p>4. (원안과 같음)</p> <p>5. (원안과 같음)</p> <p>6. (원안과 같음)</p> <p>③기금의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신설></p>	<p>제6조의 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별 담당 국·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 전문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p>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④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p> <p>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p> <p>.....</p> <p>②.....</p> <p>.....</p> <p>③.....</p> <p>.....</p> <p>.....</p> <p>④.....</p> <p>.....</p> <p>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공무원 및 기금별 자문위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기금별 자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예탁금의 이자지급) 예탁금의 이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이율을 각 기금별 출연지분율에 각 기금별 기간산정 후 계산하여 적용하며, 매 회계연도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에 년 1회 지급한다.</p>	<p>제11조(예탁금의 이자지급) 예탁금의 이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이율을 각 기금별 출연지분율에 각 기금별 기간산정 후 계산하여 적용하며, 매 회계연도 말에 지급하고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에 정산한다.</p>
<p>제14조(통합기금의 운용·관리)</p> <p>①통합기금은 시장이 운용·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기금관리관이 대행한다.</p> <p>②통합기금관리관은 통합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통합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시장의 승인을 얻어 통합기금운용 전반에 관하여 지시할 수 있다.</p> <p>③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p> <p>④통합기금의 금융자산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p> <p>⑤각 기금별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p>	<p>제14조(통합기금의 운용·관리)</p> <p>①.....</p> <p>.....</p>
<p>제15조(배정계획)</p> <p>①기금운용관은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u>통합기금관리관에게</u> 제출하여야 한다.</p> <p>②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기금운용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금별지출계획서에 의하여 각 기금의 월별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기금관리관이 이를 확정한다.</p>	<p>제15조(배정계획)</p> <p>①.....</p> <p>.....</p>
<p>제18조(융자금의 이자계산)</p> <p>①융자금의 이율은 사업에 따라 연리 4퍼센트 이상 7퍼센트 이하로 되어, 시중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p> <p>②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을 산입하여 계산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p>	<p>제18조(융자금의 이자계산)</p> <p>①융자금의 이율은 시중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p> <p>②.....</p> <p>.....</p> <p>.....</p>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828
----------	------

제안년월일 : 2009. 4. 15 .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수정 이유

-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목적 및 위원회 통합 운영과 다른 의미의 자문단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 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심의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및 시의원이 참여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수를 늘리는 등,
-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정하고자 함.

□ 주요 골자

-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 제3항)
- 위원회 위원수를 “9인”에서 “13인”으로 수정함.(안 제6조의 2 제1항)
- 위원회의 구성원에 “시의회의원”을 추가하여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함.(안 제6조의 2 제2항 제1호)
- 자문단 설치 규정 삭제로 인하여 “기금별 자문위원”이 아닌 “기금별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도록 수정함.(안 제7조 5항, 6항)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6조 제3항을 삭제한다.
- 제6조의 2 제1항 중 “9인”을 “13인”으로 수정한다.
- 제6조의 2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영 또는 기금관련분야 전문가, 시의회의원.
- 제7조 제5항 중 “기금별 자문위원을”을 “기금별 관련분야 전문가를”로 하고, 동조 제6항 중 “기금별 자문위원”을 “기금별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

신 · 구 조문 대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략) ③기금의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다.</p>	<p>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② (원안과 같음) <삭 제></p>
<p>제6조의 2(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1.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 전문가 2. (생략) ③~④ (생략)</p>	<p>제6조의 2(위원회의 구성) ①----- 13인 -----. ② (원안과 같음) 1.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 전문가, 시의회 의원 2. (원안과 같음) ③~④ (원안과 같음)</p>
<p>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④ (생략) ⑤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공무원 및 기금별 자문위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기금별 자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④ (원안과 같음) ⑤----- 기금별 관련분야 전문가를 -----. ⑥----- 기금별 관련분야 전문가 -----.</p>